

한국건강증진개발원-한국디자인진흥원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

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기관 간 업무협조, 경험 공유 등의 상호 인사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인재육성 및 상호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 조 목적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인사교류 실시 및 업무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력사항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.

1. 상호 인사교류 실시
2. 양 기관의 주요사업(디자인 및 건강증진분야) 상호 협력지원
3. 사업 및 정책 관련 자문·심의 등을 위한 전문위원 교류
4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3조 비용

본 업무협약에 의한 협력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한다.

제4조 보안

1.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2. 양 기관은 협약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, 협약 해지

1.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정하며, 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별도 상호협의를 없을 시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2. 협약 기간 중 협력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6조 기타

양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1.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르며, 그 외의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. 양 기관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월 29일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

원장 조인성

조인성

한국디자인진흥원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

원장 윤주현

윤주현